

[개정안]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및 신고에 관한 지침

2022. 2.

지침운용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준법감시관	차장 이근호	055-922-5092
	차장 김종화	055-922-5078
	대리 김미리	055-922-5079

#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및 신고에 관한 지침 제정안

## 1. 제정 이유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2021. 10. 2.) 및 인사혁신처의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 시행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 운영하여야 함.

## 2. 주요골자


가. 부동산 취득이 제한되는 부서 및 제한되는 부동산의 범위

나.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취득 여부 확인 방안

다. 법 제14조의 16 제1항에 따른 신고 방법

라.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 등 조치 방안

[목차]

	<b>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및 신고에 관한 지침</b>	지침번호	제2708호
		시행일	2022.03.01
		담당부서	준법감시관
		담당자	차장 이근호

개정연번	개정일자	개정번호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제정	2022.02.25.	제2708호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및 신고에 관한 지침 제정

## 목 차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 제3조 용어의 정의

### 제2장 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및 예외적 취득의 신고

- 제4조 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 제5조 부동산 신규취득 여부의 조사
- 제6조 예외적 취득의 신고
- 제7조 신고사항의 확인

### 제3장 의무 위반시 조치 등

- 제8조 의무 위반시 조치
- 제9조 비밀유지 의무
- 제10조 기타 세부사항

### 부 칙

- 제1조 시행일

[본문]

#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및 신고에 관한 지침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소속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공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한부서”란 공사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제한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제한부서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상급 감독자를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

한다.

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말한다.

## 제2장 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및 예외적 취득의 신고

제4조(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① 제한대상자 등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

②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1. 상속

2.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3.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4. 근무·취학 또는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업무 관련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④ 사장은 직무 관련 부동산에 해당하는 사업이 지구지정, 주민 공고·공람 등으로 대외에 공개된 후 지체없이 문서 통보 또는 내부 전산망 게시 등의 방법으로 사업정보를 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지를 위해 사업추진부서의 장은 대외 공개 후 사업 정보를 부동산윤리업무 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부동산 신규취득 여부의 조사)** ① 사장은 제한대상자 등의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제1항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대상자에게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장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따라 신고된 부동산 보유·매수 현황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예외적 취득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득 사실을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한대상자는 그 이해관계자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득 사실을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9 서식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하여야 한다.

④ 제한대상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이 제4조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사항의 확인)** ① 사장은 제6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

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제한대상자 등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이 제4조 제3항의 예외적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준법감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 제3장 의무 위반시 조치 등

**제8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사장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한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4조에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2. 제한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
3. 제한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기타 세부사항) 사장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 등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

제한부서	제한 부동산의 범위 <sup>1)</sup>	취득제한기간	
		시기	종기
전 부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에 따라 공사가 사업 수행을 위해 취득 예정인 토지 및 건물, 공사가 분양·공급하는 토지 및 건물 <sup>2)</sup>	공사의 사업 참여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표된 날 <sup>3)</sup>	수분양자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날

- 1) 본 지침 시행일 이전 매매계약(우선 분양전환 권리가 있는 주택임대차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라 시행일 이후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은 신규 취득 제한 부동산에서 제외한다.
- 2) “공사가 분양·공급하는 토지 및 건물” 중 공사가 공사 홈페이지,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홈페이지를 통해 추천제 분양 또는 추천에 의한 동호지정순번을 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 3) “공사의 사업 참여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표된 날”이란 사업이 주민공고·공람, 지구지정 등으로 고시되거나 일간신문, 홈페이지 등에 안내되어 대외에 최초로 공개된 날을 말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공표되기 전이라도 제한대상자 등이 직무 관련 부동산임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부동산은 취득제한에 해당하며, 예외적 취득 시 제한대상자는 제6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